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0. 13.(목) 16: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 - (2011-56-214)

-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계획과 그에 따른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공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고시) 개정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 주파수 할당계획 주요내용
 - ① 할당대상 주파수 : 2.5GHz대역(40MHz폭, 2575 ~ 2615MHz)
 - ②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 주파수 이용기간 : 7년
 - ③ 할당방법
 -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가격경쟁(경매)에 의해 대가할당하며,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
 - ※ 경매 장소 및 세부진행방안 등 필요사항은 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최저경쟁가격 : 807억원
 - ④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 (주파수 용도)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 (기술방식) 3G 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4G WiBro 방식
 - 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할당
 - ⑥ 추진일정
 - '11. 10월 : 주파수할당 공고 (1개월)
 - '11. 12월 : 주파수 할당(경매) 실시

나.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1-56-215~231)

-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주)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및 대명정보 등 15개사*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애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주)타워정보통신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춘천MBC - (2011-56-232)

- 제53차 전체회의('11.9.28)에 이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춘천MBC와 관련 사업자인 원주강릉삼척 MBC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방송보조국 구축 관련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춘천MBC에게 제2안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시정명령 위반사항

- '11. 3. 23일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11. 6월말까지 구축하여야 하는 5개 방송보조국(태기산, 초록봉, 대암산, 양양, 호산) 중 3개(태기산, 양양, 호산)를 미구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② 시정명령 내용

< 시정명령 >

- ◆ 태기산, 양양, 호산 등 3개 방송보조국을 '11.12월 말까지 준공 완료하고, 준공 완료 후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분쟁조정위의 심의대상 확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기준 구체화,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안 제21조의3)

- IPTV콘텐츠 관련 분쟁 및 전기통신설비 사용 관련 분쟁 조정 추가

②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화 (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 경쟁상황평가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교수, 연구원, 법조인, 임원 등 5년 이상 재직), 위원 임기(2년) 등 규정

- 경쟁상황 평가 시 관련시장 확정 기준, 시장구조·시청자의 대응력 등 평가시 고려사항,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등 평가절차 규정

※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시장과 IPTV시장에 대한 경쟁 상황평가를 함께 실시

③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구체화 (안 제63조의5 및 별표 제2의4)

- 방송법상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 채널·프로그램 제공 ·필수설비 접근 거부 ·채널편성 변경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채널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3.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적인 설비 접근을 거부·중단·제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편성을 변경
II. 적절한 수익배분 거부 등	1. 적절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등을 거부·지연, 이면계약 등 강요
	2. 계약조건·수익산정방식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거나,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수익배분을 현저히 제한
III. 방송시청의 방해 등	1.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개별 시청자 가입 동의 없이 단체계약 체결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
	2. 과도한 위약금 청구,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 미고지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방해
IV. 부당한 시청자 차별	1.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방송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 유도
	3. 결합판매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
V. 이용약관 위반 등	1.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3.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VI.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1.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2.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기 타	1. 필수설비의 범위, 위 I.~VI.의 세부 유형 등은 고시로 위임

④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제63조의3 및 별표 2의3)

- 과징금 상한액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기준금액, 필수적·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적용 비율과 고려사유 등 세부사항과 방법은 고시로 위임

※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정리·검증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기준)보다 산정이 용이한 연평균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함

⑤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절차방법 규정 (안 제63조의4)

- 방통위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⑥ 향후 일정(안)

-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 '11.10월 ~ 12월
- 위원회 의결 : '11.12월중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및 공포 : '11.12월말 ~ '12.1월중

⑧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0. 19(수). 오전 9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35)